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20
----------	-------

발의연월일 : 2021. 9. 3.

발의자 : 홍익표 · 김민기 · 민형배

변재일 · 서동용 · 이규민

이장섭 · 이형석 · 임호선

정태호 · 한준호 · 홍성국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 하여금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자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관련 내용을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지는 않아 원자력이용시설 고장 관련 내용이나 통보 방식이 지역마다 일치하지 않고, 사고 발생 시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도 현행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1항제1호다목 신설 및 안 제9조).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8239호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

제9조의 제목 중 “주민에”를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주민에게”를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로 한다.

이 경우 제공하려는 원자력안전정보가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면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일시 및 고장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에 관하여는 해당 원자력이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8239호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법률 제18239호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
1. “원자력안전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1.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u><신 설></u>	<u>다. 「원자력안전법」 제92</u>
	<u>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되는 원자력이용 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u>
<u>다. · 라. (생 략)</u>	<u>라. · 마. (현행 다목 및 라목과 같음)</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 안전정보의 제공) ①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관계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정보를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	제9조(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① -----.

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②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원자력안전정보의 종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 경우

제공하려는 원자력안전정보가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면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일시 및 고장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에 관하여는 해당 원자력이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